[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관련 안내문]

■ **관련 법령** : 「농지법」 제38조 제2항 및 제3항, 시행령 제50조, 시행규칙 제45조

■ **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시기**

- **(사전납부 금액)** 농지보전부담금의 **30%이상**을 사업허가 등 전에 미리 납부
- **(분할납부 잔액)** 허가일로부터 **4년 범위 내 4회 이내**로 하여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결정하되 **최종납부일은 준공일 이전**으로 함

* 회차별 분할납부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(3%,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), 중가산금(1개월 경과시마다 1.2% 가산, 최대 60개월) 각각 부과

■ **납부방법** :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납부

* 납입고지서는 2차에 걸쳐 발송(1차는 사전납부, 2차는 회차별 분할납부고지서 전부)

* 가상계좌로 납부시 별도의 납입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급적 금융기관 창구이용

■ **허가증 발급** : 사전납부금 납부 후 관할청에서 발급 가능

■ **분할납부 잔액에 대한 보증서(보증보험증권) 등 발급**

- **제출기한** :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서 등을 관할청에 제출

* 기한 내에 보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가 취소되며, 분할납부 잔액(70%)에 대하여 가산금(3%) 및 중가산금(1개월 경과시마다 1.2% 가산, 최대 60개월) 각각 부과

- **보증서 등 발급방법**

– 수 취 인 : 한국농어촌공사(사업자번호 : 123-82-08470)

– 보 증 기 간 : 회차별로 각 **30일 가산**

– 보 증 금 액 : 회차별로 납부할 금액의 **110%**

– 보증서는 분할납부 회차별로 각각 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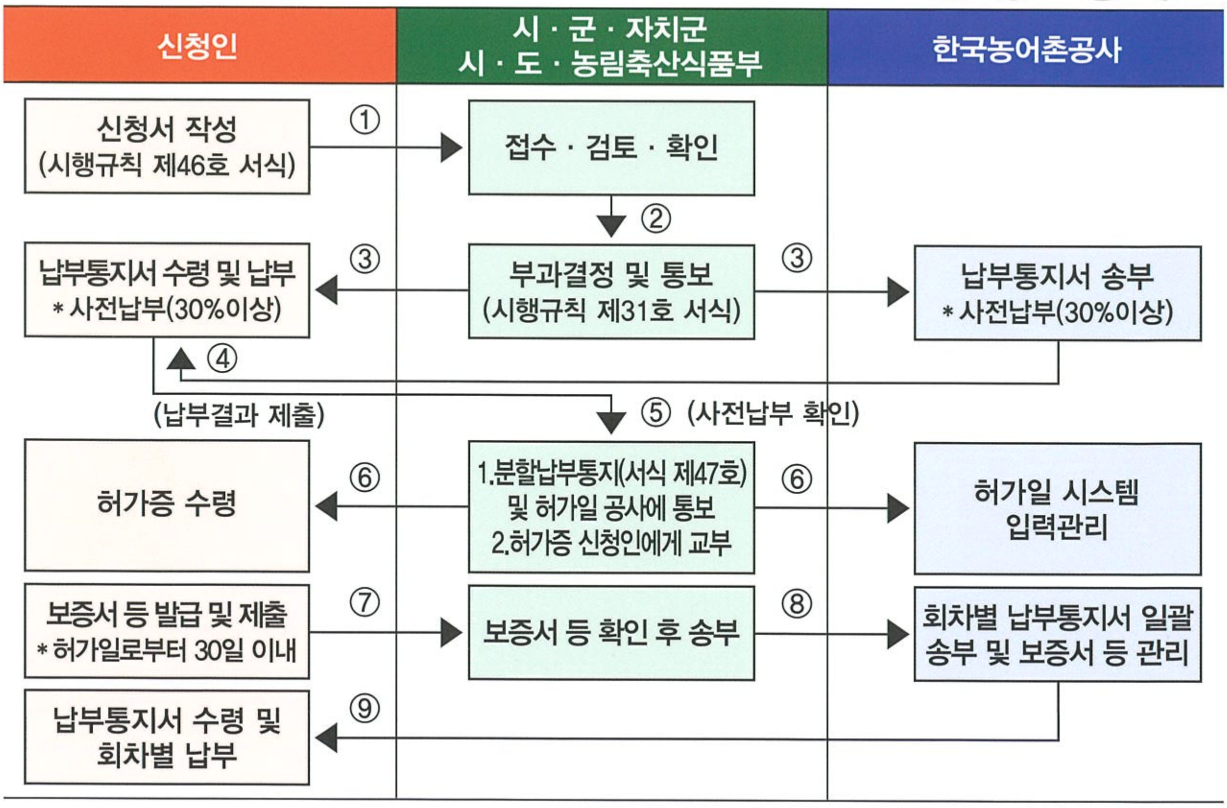

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| (우) 58217 /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
(TEL) 061-338-5963 (FAX) 061-334-7282